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 검 토 보 고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9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영 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총괄 검토 .....                                       | 3  |
|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 .....                          | 3  |
|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 9  |
| 2. 조문별 검토 .....                                      | 11 |
| 가. 총칙 (제1장) .....                                    | 11 |
| 나.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br>(제2장) ..... | 25 |
| 다.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 (제3장) .....                         | 27 |
| 라.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등 (제4장) .....                         | 36 |
| 마. 정책조정 및 집행체계 (제5장) .....                           | 40 |
| 바. 부칙 .....                                          | 48 |
| ※ 참고자료                                               |    |
| 1. 전국 걷기여행길 현황 .....                                 | 50 |
| 2.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의견 .....                       | 51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염태영의원 등 23인

나. 발 의 일 : 2026. 4. 13.

다. 회 부 일 : 2026. 5. 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여가·관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운동공간,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체험을 위한 교육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걷기여행길을 조성·운영하고 있어 정책 중복과 갈등, 관리 책임의 불분명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역

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 다.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둠(안 제19조).

### Ⅲ. 검토의견

#### 1. 총괄 검토

#####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 필요성

최근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경쟁적으로 걷기여행길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처 간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과 이용객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sup>1)</sup>.

이에 제정안은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걷기여행길의 일원화된 지정체계 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걷기여행길

---

1)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한국관광공사, 2017.12.)」에 따르면, 동일구간 중복 지정(전국 총 69개 중복구간: 서울(5), 부산(8), 울산(7), 경기(8), 강원(8), 전남(6), 제주(6) 등)으로 여러 개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동일한 걷기여행길의 정부부처 공모사업 중복 신청으로 재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관광, 해양, 임업 관련 부서에서 각각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조성된 후 소관 불분명 또는 유지보수비 미편성 등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조성 후 관리 소홀로 15개 길 18개 코스가 관리기관 불명, 17개길 38코스가 운영 중단되었음).

국가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걷기여행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관리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걷기여행길 조성·관리의 정책 방향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이용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일부 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을 “자연·역사·문화·생활공간을 연결하여 걷기여행에 이용되는 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길”로 정의하고 지정요건 및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제정안의 입법목적 및 정의에 따르면 걷기여행길은 탐방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sup>2)</sup>상의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행자길”과 “보행자전용길”은 탐방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걷기여행길”과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sup>3)</sup>상의 “숲길”(트레킹길·탐방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로·휴양·치유숲길) 역시 “걷기여행길”과 중복 소지가 있으며, 동법 상 숲길기본계획 수립, 숲길의 조성·운영·관리, 국가숲길의 지정·운영·관리 등의 규정<sup>4)</sup> 역시 제정안의 걷기여행길 기본계획 수립, 걷기여행

####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림레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④ (생략)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길 지정·운영 체계 등 관리체계 등과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걷기여행길 조성사업은 자원 특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역사·문화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자원), 행정안전부(지역 단위), 해양수산부(해안자원), 산림청(산림자원)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되었는바<sup>5)</sup>,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간의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sup>6)</sup>.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중복입법 여지 존재, 기존 제도와의 기능 중복 및 권한 충돌, 계획·조직·예산의 중복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은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법」상 지원 규정의 보완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5) ‘걷기여행길(가칭)’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중앙행정기관이 921개 길, 2,461코스, 22,289km를 조성·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걷기여행길 현황은 [참고자료 1] 전국 걷기여행길 현황 참조

[출처: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2017.12.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2026.6)]

6) [참고자료 2]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의견 참조

산림청은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은 기존 법령 및 사업체계와 중복·충돌 가능성이 크고, 법 체계 정합성, 국민 편의, 예산 효율성, 현장 관리 책임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조성·관리하는 숲길을 걷기여행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은 걷기여행길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률안 4건이 제18대 ~ 제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 유사법률안 발의 현황 ]

| 제안<br>대수 | 법률안명                           | 대표발의  | 의안번호    | 제안일         | 심사결과   |
|----------|--------------------------------|-------|---------|-------------|--------|
| 제18대     | 걷는 길 조성 지원에<br>관한 법률안          | 원혜영의원 | 1813265 | 2011.9.23.  | 임기만료폐기 |
| 제19대     |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br>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원혜영의원 | 1902361 | 2012.10.31. | 임기만료폐기 |
| 제20대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br>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의원 | 2012632 | 2018.3.23.  | 임기만료폐기 |
| 제21대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br>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의원 | 2102501 | 2020.7.30.  | 임기만료폐기 |

##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안 제1조~제7조)은 제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이용자 등의 의무, 공공접근권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8조·제9조)에서는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안 제10조~제14조)에서는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의 기본 원칙, 걷기여행길의 지정, 안전 관리, 환경 관리 및 품질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등(안 제15조~18조)에서는 이용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 민간 참여,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5장 정책조정 및 집행체계(안 제19조~제23조)에서는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설치,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관리운영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걷기여행길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 구 분                                                | 세부 조문                                                                                                                                                                                                           |
|----------------------------------------------------|-----------------------------------------------------------------------------------------------------------------------------------------------------------------------------------------------------------------|
| 제1장<br>총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1)</li> <li>▪ 기본이념(§2)</li> <li>▪ 정의(§3)</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li> <li>▪ 국민의 권리와 이용자 등의 의무(§5)</li> <li>▪ 공공접근권(§6)</li> <li>▪ 다른 법률과의 관계(§7)</li> </ul> |
| 제2장<br>걷기여행길<br>구성·관리 및 이용<br>활성화를 위한<br>기본계획 수립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8)</li> <li>▪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9)</li> </ul>                                                                            |
| 제3장<br>걷기여행길 조성 및<br>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과 관리의 기본 원칙(§10)</li> <li>▪ 걷기여행길의 지정(§11)</li> <li>▪ 안전 관리(§12)</li> <li>▪ 환경 관리(§13)</li> <li>▪ 품질 인증제도(§14)</li> </ul>                                            |
| 제4장<br>이용 활성화 및 지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활성화 사업(§15)</li> <li>▪ 재정 지원(§16)</li> <li>▪ 민간 참여(§17)</li> <li>▪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18)</li> </ul>                                                                   |
| 제5장<br>정책조정 및 집행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19)</li> <li>▪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0)</li> <li>▪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설치(§21)</li> <li>▪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22)</li> <li>▪ 관리운영전담기관(§23)</li> </ul>                   |
| 부 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일(§1)</li> <li>▪ 걷기여행길에 관한 경과조치(§2)</li> </ul>                                                                                                                       |

## 2. 조문별 검토

### 가. 총칙(제1장)

#### 1) 목적(안 제1조)

안 제1조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1조(목적)</b> 이 법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최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쟁적·중복적으로 조성된 다양한 걷기여행길들이 관리·활용 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조성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안의 제정 목적에 걷기여행길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 기본이념(안 제2조)

안 제2조는 동 법의 기본이념으로 걷기여행길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의 보전 및 기후변화의 대응, 역사·문화 유산의 활용 및 가치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 사회 복지 증진 등 건강·환경·문화·경제·복지의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2조(기본이념)</b> 이 법은 걷기여행길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으로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자연환경의 보전 및 기후변화의 대응, 역사·문화 유산의 활용 및 가치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공동체의 형성, 사회 복지 증진 등 건강·환경·문화·경제·복지의 통합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을 함에 있어 건강·환경·문화·경제·복지적 가치의 융합 및 실현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기본이념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안 제2조 기본이념의 내용은 안 제1조 목적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규정이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기본이념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기본이념규정은 목적규정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해

야 한다는 점<sup>7)</sup>을 고려할 때, 목적규정과 별개로 기본이념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3) 정의(안 제3조)

안 제3조는 걷기여행, 걷기여행길, 관리기관, 관리운영전담기관 등 제정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3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걷기여행”이란 걷기를 주된 활동으로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하고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li> <li>2. “걷기여행길”이란 자연·역사·문화·생활공간을 연결하여 걷기여행에 이용되는 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길을 말한다.</li> <li>3. “관리기관”이란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li> <li>4. “관리운영전담기관”이란 걷기여행길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운영을 전담으로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를 말한다.</li> </ol> |

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43

정의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조제1호는 “걷기여행”을 “걷기를 주된 활동으로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하고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하고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조제2호는 “걷기여행길”을 “자연·역사·문화·생활공간을 연결하여 걷기여행에 이용되는 길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길”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걷기여행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별도의 법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걷기여행길 조성사업의 취지 등에 따라 코리아둘레길, 국가숲길, 국가생태탐방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바, 제정안은 기존에 여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길을 총괄하여 아우르는 개념을 신설하여 관리 대상이 되는 길을 지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걷기여행길 현황 ]

| 부처명          | 걷기여행길명                | 대표노선                                     | 관리주체                        | 총 길이         |
|--------------|-----------------------|------------------------------------------|-----------------------------|--------------|
| 문화체육<br>관광부  | 코리아둘레길                | 해파랑길, 남파랑길,<br>서해랑길, DMZ<br>평화의 길        | 한국관광공사<br>(길과문화)+<br>지방자치단체 | 약<br>4,500km |
| 산림청          | 국가숲길                  | 동서트레일,<br>지리산둘레길,<br>백두대간트레일,<br>대관령숲길 등 | 한국등산트레킹<br>지원센터+<br>지방자치단체  | 약<br>4,538km |
| 기후에너지<br>환경부 | 국가생태탐방로               | 국가생태탐방로<br>(한강·낙동강·백두대간<br>권역 등)         | 국립공원공단                      | 약<br>1,400km |
| 행정안전부        | 우리마을<br>녹색길,<br>평화누리길 | 평화누리길,<br>소백산자락길 등                       | 지방자치단체                      | 약<br>1,300km |
| 국토교통부        | 수변길                   | 한강·금강·영산강·<br>낙동강 권역 수변길                 | 지방국도관리청<br>+지방자치단체          | 약 620km      |
| 해양수산부        | 해안누리길                 | 전국 해안누리길                                 | 지방자치단체                      | 약 563km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걷기여행길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길”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걷기여행길, 보행자길 및 숲길 비교 ]

| 구분 | 걷기여행길                                                                         | 보행자길                                                                                                      | 숲길                                                                             |
|----|-------------------------------------------------------------------------------|-----------------------------------------------------------------------------------------------------------|--------------------------------------------------------------------------------|
| 법률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정의 | 자연·역사·문화·생활 공간을 연결하여 <u>걷기 여행에 이용되는 길</u> 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길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보도, 통학로, <u>탐방로</u> , <u>산책로</u> , 등산로, <u>숲체험코스</u> ,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등산· <u>트레킹</u> ·레저스포츠· <u>탐방</u> 또는 <u>휴양·치유</u>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 |

## [ 관련 법률 규정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

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 10. (생략)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또한,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조성·관리·운영”하는 길로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11조에서 걷기여행길

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에 따라 지정”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여행길의 정의는 각 법령과 제도를 통해 관리 중인 다양한 길 체계와 범위가 중첩될 가능성이 크므로, 포괄적 정의를 전제로 별도의 기본법 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관광 분야에서 필요한 범위의 “걷기여행길” 개념을 「관광진흥법」에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또한, 산림청은 걷기여행길은 숲길, 탐방로, 보행자길, 해안길, 마을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 개별 법률 및 부처별 사업체계와 중복 우려가 있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숲길·동서트레일 등 숲길과 지정·운영체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sup>8)</sup>을 제출하였음.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 제4조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지원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8) 제정안대로 추진할 경우 걷기여행길의 정의에서 숲길 등은 제외될 필요

## 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걷기여행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반영하여 걷기여행길을 조성·운영하고 주민과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할 경우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이미 개별 법령, 개별 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제정안과 같이 포괄적 책무를 일률적으로 법정화할 경우 기존 개별 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5) 국민의 권리와 이용자 등의 의무(안 제5조)

안 제5조는 걷기여행길의 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

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5조(국민의 권리와 이용자 등의 의무)</b> ①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br>② 걷기여행길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으로 인하여 걷기여행길과 역사·문화·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br>③ 걷기여행길의 점용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제정안은 국민의 권익 차원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권리를 선언하고, 걷기여행길 이용자 및 관리자 등의 걷기여행길 훼손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걷기여행길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훼손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걷기여행길 이용자의 의무에 인근 주민 등 타인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 등의 의무규정과 관련하여 개별 길의 특성과 관리주체, 적용 공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본법상 일반규정으로 두기보다는 개별 법령조례 또는 운영기준에서 정하도록 하거나 「민법」의 선량한 주의의무 등을 준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

다는 입장임.

## 6) 공공접근권(안 제6조)

안 제6조는 국민의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권리 및 걷기여행길 소유자의 권리 존중,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6조(공공접근권)</b> ① 모든 국민은 걷기여행길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br>② 관리기관은 사유지에 속하는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때에는 그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협약·보상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1항은 국민의 자유로운 걷기여행길 이용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필요 시 이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와 공익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라는 표현은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사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권 제한 또는 통행권 인정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6조제2항은 걷기여행길의 구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와의 협약·보상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

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여행길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 매수·사용, 협약, 보상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제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임.

## 7)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안 제7조는 걷기여행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걷기여행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련된 여러 개의 개별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임.

안 제7조는 걷기여행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제정·개정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정안이 걷기여행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모든 길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5조제1항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률 적용 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관련 조문 비교 ]

|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걷기여행길에 관한 <u>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u>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br>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u>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u> |

따라서 걷기여행길 관련 다른 법률과 중복·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적용 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제2장)

### 1)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8조·제9조)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8조(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걷기여행길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li> <li>2. 걷기여행의 현황 및 전망</li> <li>3. 걷기여행길의 평가,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li> <li>4. 걷기여행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li> <li>5.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제9조(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p> |

| 제 정 안                                                                                                                                                                                                                                                                                                       |
|-------------------------------------------------------------------------------------------------------------------------------------------------------------------------------------------------------------------------------------------------------------------------------------------------------------|
| <p>“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걷기여행길의 편의시설, 탐방안내시스템 등 기반 조성</li> <li>2. 걷기여행길의 조사·홍보·이용 활성화</li> <li>3. 걷기여행길의 안전·환경 관리, 정보망 구축</li> <li>4. 걷기여행길 관련 인력양성과 민관협력</li> <li>5.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걷기여행길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걷기여행길에 대한 사업 및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계획 수립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제3장)

### 1) 조성과 관리의 기본 원칙(안 제10조)

안 제10조는 관리기관이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10조(조성과 관리의 기본 원칙)</b> 관리기관은 걷기여행길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것</li><li>2.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및 자연생태적 가치를 살릴 것</li><li>3. 기존의 옛길,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li><li>4. 주변경관을 해치는 인위적인 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본연의 환경을 유지할 것</li><li>5.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참여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것</li></ol> |

안 제10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 역사적·문화적·환경적 가치 보존, 지역사회 참여 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지형, 토지이용, 소유관

계 등에 따라 기본 원칙의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걷기여행길의 지정(안 제11조)

안 제11조는 국가가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국가걷기여행길, 광역걷기여행길, 지역걷기여행길로 구분하여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11조(걷기여행길의 지정)</b> ① 국가는 걷기여행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걷기여행길: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걷기여행길</li> <li>2. 광역걷기여행길: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어 관리 및 이용촉진이 필요한 걷기여행길</li> <li>3. 지역걷기여행길: 하나의 시·군·구에 위치하거나 하나의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 관리 및 이용촉진이 필요한 걷기여행길</li> </ol> <p>② 걷기여행길의 구분,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여행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걷기여행길을 국가·광역·지역 단위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1조는 국가가 모든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및 자연생태적 가치를 살리도록 하고,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한 안 제10조(조성과 관리의 기본 원칙)의 취지를 살려 ① 광역 또는 기초 단위의 걷기여행길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마련하거나, ② 국가의 걷기여행길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그동안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권한·책임의 귀속과 사무의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1조제1항의 걷기여행길 지정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기보다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변경,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 요건 및 지정 해제 등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여행길은 기관별 정책 필요성 및 여건에 따라 운영 중으로 법제화를 통한 지정 실익이 부족한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걷기여행길” 지정의 경우 “대표”의 의미는 단수의 길만 선정 가능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복수화가 가능하도록 자구 수정<sup>9)</sup>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산림청은 국가걷기여행길 등 새로운 지정체계가 추가될 경우 동일 노선에 복수 명칭·정보망·인증체계가 병존하게 되어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3) 안전 관리(안 제12조)

안 제12조는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이 걷기여행길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12조(안전 관리)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은 걷기여행길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대비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 따라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에 걷기여행길의 안전

9) 국가걷기여행길: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걷기여행길들로,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성한 길

시설 확보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할 경우 걷기여행길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조제3호는 “관리기관”을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주체별로 안전 관리 대상 걷기여행길을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체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0)) 하에서도 걷기여행길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가능해

---

1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별도의 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4) 환경 관리(안 제13조)

안 제13조는 관리기관이 걷기여행길을 조성하는 경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자재·설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관리기관과 관기운영전담기관은 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 통행제한이나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13조(환경 관리)</b> ① 관리기관은 걷기여행길 조성에 있어 주변경관의 조화를 고려하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 자재와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보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 관련 정보구축 방안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정 안                                                                                                                                        |
|----------------------------------------------------------------------------------------------------------------------------------------------|
| ② 관리기관과 관리운영전담기관은 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그 사유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안 제13조제1항은 걷기여행길의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걷기여행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안 제13조제2항은 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행제한이나 예약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제한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사유와 기간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조화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체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하에서도 걷기여행길에 대한 환경 관리 수행이 가능해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걷기여행길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마의 통행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 제13조제2항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5) 품질 인증제도(안 제14조)

안 제14조는 국가가 걷기여행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14조(품질 인증제도) ①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환경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11)</sup>.

안 제14조는 국가가 걷기여행길의 품질 인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걷기여행길의 지역별, 관리주체별 품질 격차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11조는 걷기여행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걷기여행길의 지정 제도와 별도로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354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걷기여행길은 도시형 보행로, 숲길, 해안길, 수변길, 생태탐방로 등 형태와 성격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평가기준 설정 및 운영의 실효성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라.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등(제4장)

### 1) 이용 활성화 사업(안 제15조)

안 제15조는 걷기여행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15조(이용 활성화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축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해설·교육, 국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안 제15조는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에서 나아가 걷기축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해설·교육,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실질적인 이용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걷기문화 확산과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별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걷기여행길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용 활성화 사업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필요 시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한 보완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2) 재정 지원(안 제16조)

안 제16조는 관리운영전담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16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기여행길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운영전담기관이 걷기여행길의 관리·운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3) 민간 참여(안 제17조)

안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있어 민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17조(민간 참여)</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운영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 4)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안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기여행길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b>제18조(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걷기여행길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걷기여행길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마. 정책조정 및 집행체계(제5장)

### 1)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안 제19조 및 제20조)

안 제19조는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20조는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19조(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b> ①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②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방향</li><li>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사업 조정</li><li>3.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통합 기준</li><li>4.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자문</li><li>5.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li><li>6. 걷기여행길의 안전·환경 관리, 정보망 구축</li><li>7.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활성화 및 정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ol> <p><b>제20조(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b> ① 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② 정책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걷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추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정책협의체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신설 필요 시 부처 책임 하 설치가 원칙이며, 국무총리 소속 및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과다 설치 시 전체 국정운영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정책협의체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정책협의체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 부처 권한체계 위에 또 하나의 조정기구를 두는 것으로 실질적 집행 권한 없이 심의·조정 기능만 중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는 기본 계획, 운영 기준, 국가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자문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나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안 제19조제2항제6호는 정책협의체의 심의·조정사항으로 “걷기여행길의 정보망 구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은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간 심의·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② 안 제21조제2항제1호는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의 사업으로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설치(안 제21조)

안 제21조는 걷기여행길 주요 정책의 집행, 걷기여행길의 통합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제21조(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걷기여행길 주요 정책의 집행, 걷기여행길의 통합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및 운영</li> <li>2. 걷기여행길 조사·연구 사업</li> <li>3. 걷기여행길 인증제, 체험프로그램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li>4. 국제교류 및 국내외 홍보, 브랜드 개발</li> </ol> |

| 제 정 안                                                                                                                                                                                            |
|--------------------------------------------------------------------------------------------------------------------------------------------------------------------------------------------------|
| 5. 걷기여행길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br>6. 전문 인력 양성 사업<br>7. 지자체·민간단체 지원<br>8. 정책협의체에서 심의·조정한 사업<br>9. 그 밖에 걷기여행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br>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국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걷기여행길 관련 사업의 집행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운영, 조사·연구,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존 조직 체계를 활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안 제21조제3항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통합지원센터)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위탁이 필요한 “대상 사업”을 열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규 통합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sup>12)</sup>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sup>13)</sup>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과 부속기관을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법령에 배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3)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안 제22조)

안 제22조는 통합지원센터가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이 걷기여행길 관련 정보를 걷기여행길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12)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 ⑩ (생략)

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 6. (생략)

## 제 정 안

**제22조(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① 통합지원센터는 걷기여행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걷기여행길의 노선·지도·난이도·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걷기여행길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은 걷기여행길 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 간 정보 연계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플랫폼(두부누비)을 통해 코리아둘레길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며, 민간에서도 걷기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sup>14)</sup>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특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여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축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안 제22조제1항의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를 “걷기여행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4) 트랭글, 산길샘나들이, 램블러, 올댓스텝프

#### 4) 관리운영전담기관(안 제23조)

안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운영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p><b>제23조(관리운영전담기관)</b>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관리운영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걷기여행길 조사</li> <li>2. 걷기여행길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상시 관리 및 유지·보수</li> <li>3. 걷기여행길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사업</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영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제정안은 관리운영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유지·보수, 홍보 등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걷기여행길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다만, 관리운영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중 걷기여행길 조사,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은 안 제21조 통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sup>15)</sup>과 중복된다

15) 걷기여행길 조사·연구사업(안 제21조제2항제2호), 국제교류 및 국내외 홍보, 브랜드 개발(안 제21조제2항제4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안 제21조제2항제6호)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보조사업 형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탁업무 관련 근거규정의 마련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바. 부칙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걷기여행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제 정 안                                                                         |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걷기여행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운영 중인 걷기여행길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먼저,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의 정비 및 법률의 시행 준비 등을 위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운영 중인 걷기여행길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기존에 조성된 다양한 걷기여행길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단체가 걷기여행길을 조성·관리·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간단체가 조성·관리·운영 중인 걷기여행길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것”을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77 |

## ※ 참고자료

### 1. 전국 걷기여행길 현황

| 연<br>번 | 구 분            |          | 걷기길<br>개소 수 | 총<br>코스 수 | 총<br>연장(km) | 비고      |
|--------|----------------|----------|-------------|-----------|-------------|---------|
| 1      | 중앙<br>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4           | 284       | 4,500       |         |
| 2      |                | 기후환경에너지부 | 40          | 102       | 1,400       | '17년 기준 |
| 3      |                | 산림청      | 311         | 802       | 4,538       |         |
| 4      |                | 국토교통부    | 37          | 83        | 619         | '17년 기준 |
| 5      |                | 행정안전부    | 85          | 181       | 1307        | '17년 기준 |
| 6      |                | 해양수산부    | 48          | 52        | 563         | '17년 기준 |
|        |                | 소계       | 525         | 1,504     | 12,927      |         |
| 7      | 지방<br>자치<br>단체 | 서울특별시    | 97          | 153       | 795         | '17년 기준 |
| 8      |                | 부산광역시    | 33          | 15        | 460         |         |
| 9      |                | 대구광역시    | 6           | 26        | 203         | '17년 기준 |
| 10     |                | 인천광역시    | 14          | 85        | 676         |         |
| 11     |                | 광주광역시    | 34          | 34        | 160         |         |
| 12     |                | 울산광역시    | 5           | 9         | 77          | '17년 기준 |
| 13     |                | 대전광역시    | 6           | 14        | 118         | '17년 기준 |
| 14     |                | 경기도      | 12          | 128       | 1,726       |         |
| 15     |                | 강원도      | 24          | 91        | 1345        | '17년 기준 |
| 16     |                | 충청북도     | 15          | 32        | 157         |         |
| 17     |                | 충청남도     | 19          | 28        | 196         | '17년 기준 |
| 18     |                | 전라북도     | 11          | 28        | 401         | '17년 기준 |
| 19     |                | 전라남도     | 36          | 80        | 1285        | '17년 기준 |
| 20     |                | 경상북도     | 23          | 41        | 351         | '17년 기준 |
| 21     |                | 경상남도     | 54          | 146       | 886         |         |
| 22     |                | 제주도      | 3           | 8         | 55          |         |
|        |                | 소계       | 392         | 918       | 8,891       |         |
| 23     | 기타             | 기타       | 4           | 39        | 471         | '17년 기준 |
| 합 계    |                |          | 921         | 2,461     | 22,289      |         |

출처: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한국관광공사, 2017.12.) 및 문화체육  
관광부 공문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2026.6)

## 2.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 의견

| 부처명   | 주요 의견                                                                                                                                                                                                                                                                                                                                                                                                                                                                                                                                                                                                                                                                                                      |
|-------|------------------------------------------------------------------------------------------------------------------------------------------------------------------------------------------------------------------------------------------------------------------------------------------------------------------------------------------------------------------------------------------------------------------------------------------------------------------------------------------------------------------------------------------------------------------------------------------------------------------------------------------------------------------------------------------------------------|
| 국무조정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위원회 신설 필요시 부처 책임 하 설치가 원칙이며, 총리 소속/총리 위원장인 위원회 과다 설치 시 전체 국정운영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li> </ul>                                                                                                                                                                                                                                                                                                                                                                                                                                                                                                                                                          |
| 산림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법령 및 사업체계와 중복·충돌 가능성이 크고, 법 체계 정합성, 국민 편의, 예산 효율성, 현장 관리책임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 추진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li> <li>○ 걷기 여행길은 산림청, 기후부,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등 다수 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되므로 기존 법령 체계, 소관 사무, 예산지원, 정보망 연계, 현장 관리책임 등에 대한 관계부처 논의 선행이 요구됨</li> <li>○ (숲길 제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조성·관리하는 숲길을 걷기여행길에서 제외할 필요</li> </ul>                                                                                                                                                                                                                                                                                                                                       |
| 행정안전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걷기여행길 기본법은 생활 속 운동공간, 친환경 교통로 등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절</li>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 필요</li> <li>○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는 걷기여행길 조성 기본계획, 운영 기준, 국가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나 국무총리가 의장인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고려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위원회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설정 필요</li> </ul> </li> <li>○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 ‘걷기여행길 국가통합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으로 판단되며, 조직법령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토록 하</li> </ul> |

|                 |                                                                                                                                                                                                                                                                                                                                                                  |
|-----------------|------------------------------------------------------------------------------------------------------------------------------------------------------------------------------------------------------------------------------------------------------------------------------------------------------------------------------------------------------------------|
|                 | <p>는 것은 법령체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조직 법령 규정에 배치되므로 삭제 필요</p>                                                                                                                                                                                                                                                                                                            |
| 기획예산처           | <p>○ (걷기여행길 정보망 구축)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여부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종합검토 필요</p>                                                                                                                                                                                                                                                                                       |
| 제주특별자치도         | <p>○ (환경 관리) 걷기여행길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마의 통행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근거 마련 필요</p>                                                                                                                                                                                                                                                                                       |
| (사) 한국의<br>길과문화 | <p>○ 많은 걷기여행길의 운영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기준과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는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는 법제화에 적극 찬성</p> <p>○ 정부는 정책조정, 통합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기존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과 및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민간의 주도적 역할 보장 필요</p> <p>○ 걷기여행길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자연 자원을 선형으로 연결한 문화관광 기반 콘텐츠 성격이고 길에 대한 통합정보 및 국내외 브랜드 홍보 역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도 관련 조항에 대한 조정 또는 역할 분담 필요</p> |